From: 0428701749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정기점검 계획 알림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0조(검역시행장 사후관리)에 따라 2023년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정기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업체별 세부점검 일정은 담당 점검관이 별도 통보 예정.

붙임 2023년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정기점검 계획 1부. 끝.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부산

수신자 관내 검역시행장(71개소) 귀하, 검역관리인 귀하

주무관 구자용

감호주

지원장

2023.3.9. 양호섭

협조자

시행 부산지원-1332

(2023. 3. 9.)

접수

우 4894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30번길 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 / http://www.nfqs.go.kr

/ 대국민 공개

전화번호 051-602-6033 팩스번호 061-655-0376 / rnwkghd@korea.kr

To: 0512919172 From: 0428701749

# 점검반 편성

연번	점검관	시설구분	업체명	지역
1		저온창고	고려수산감천1공장	부산
2		저온창고	고려수산(주)제2냉동공장	부산
3		저온창고	(주)동원통영수산	부산
4		저온창고	㈜성보냉 <i>장</i>	부산
5		저온창고	(주)냉장인터불고제2공장	부산
6	최가야	저온창고	주식회사 삼화농수산	부산
7	구자홍	저온창고	한일냉장(주) 1공장	부산
8	(13개소)	저온창고	(주)보림로지스틱스 부산냉장	부산
9	•	저온창고	청호냉동(주)	부산
10		육상양식	삼정수산	밀양
11	8	관상용수족관	서진열대어직판장	부산
12		육상수조	일진수산	부산
13		육상수조	(주)원수산	부산
14		저온창고	(주)냄장인터불고	부산
15		저온창고	동일냉장(주)	부산
16		저온창고	(주)부산해사랑	부산
17		저온창고	성진수산(주)	부산
18	· 강효주	저온창고	주식회사 부산냉장	부산
19	박정하	저온창고	현이냉동(주)	부산
20	(11개소)	저온창고	정현아이스텍(주)	부산
21		육상양식	청룡수산 영어조합법인	양산
22		관상용수족관	꼬기봉다리	부산
23		육상수조	(주)에 스지씨푸드	부산
24		육상수조	주식회사 골드크랩	부산
25		저온창고	고려냉장(주) 장림공장	부산
26		저온창고	고려냉장(주) 감천부두 냉동공장	부산
27		저온창고	정양산업(주)	부산
28		육상수조	감천항수산물시장(주)경매/활어	부산
29		저온창고	삼일냉장(주)제2물류센터	부산
30	신기원	저온창고	한일냉장(주) 2공장	부산
31	박준형	저온창고	연우냉동(주)	부산
32	(13개소)	저온창고	희창물산(주)	부산
33	1	저온창고	동원산업(주)부산냉장센터	부산
34		관상용수족관	해양문화주식회사	부산
35		육상수조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블루젠	부산
36		육상수조	주식회사 해저도시	부산
37		육상수조	진영수산	부산

연번	점검관	시설구분	업체명	지역
38		저온창고	(주)동남	부산
39		저온창고	세영수산(주)	부산
40	최효선 하건호	저온창고	신한냉동	부산
41		저온창고	(주)대주냉동종합보세사업장	부산
42		저온창고	동원수산(주)부산공장	부산
43		저온창고	동양섬유(주)부산지점 동양냉장	부산
44		관상용수족관	초량수족관	부산
45	(12개소)	육상수조	주식회사씨에스수산	부산
46		육상수조	(주)홍주수산	부산
47		육상수조	제로원	부산
48		육상수조	주식회사 청우디엔씨	부산
49		육상수조	지평수산	김해
50		저온창고	(주)해원냉장	부산
51		저온창고	(주)동영콜드프라자	부산
52		저온창고	사조씨푸드(주)물류센타	부산
53		저온창고	삼일냉장(주)	부산
54	장성문	저온창고	동양섬유(주)송도지점	부산
55	박소현 - 김다솜(수습) (11개소)	저온창고	홍림수산냉동(주)	부산
56		저온창고	(주)우신냉장	부산
57	(1111-11-1)	저온창고	정일글로벌 주식회사	부산
58		저온창고	(주)재호식품	부산
59		관상용수족관	멀린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부산
60		육상수조	미오수산	부산
61		저온창고	대한수산(주)	부산
62		저온창고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냉동	부산
63		저온창고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	부산
64	윤재웅	저온창고	성보종합보세장치장(감천)	부산
65		저온창고	보성냉장(주)	부산
66	김은경 정주혁(수습)	저온창고	(주)하하물산	부산
67	(11개소)	육상양식	밀양정산양만	밀양
68	(11711-27	관상용수족관	킴디스커스 앤 구피	부산
69		저온창고	(주)삼성아이에프엠	부산
70		육상수조	㈜삼성아이에프엠 활어종합보세사업장	부산
71		육상수조	(주)서부물산	부산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정기점검 병행 실시

<sup>\*</sup> 세부 점검 일정은 유선 등으로 업체와 상호 협의 후 실시

<sup>\*\*</sup> 지원 업무 형편 및 업체 사정에 따라 점검관 등 변경 가능

#### 검역시행장 점검기준

## □ 시설기준(별표1)

#### 1. 육상수조양식시설, 육상수조보관시설, 수족관시설

- 1) 야생동물, 외부가축 및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치류 및 조류(鳥類) 등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 3) 검역시설의 바닥은 평평하며,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청소 및 소독이 쉽게 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4) 검역시설은 고인 물이나 퇴적물 없이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관리되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5) 수조는 파손되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고 콘크리트, 플라스틱, 유리 등 불침투성 재 질로 청소. 세척 및 소독이 쉽게 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6) 검역물이 보관되어 있는 수조는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등 임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비 배치되어야 하고, 다른 수조의 물과 수산생물이 유입되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 7) 검역기간 중 죽은 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비해야 한다.
- 8) 죽은 개체는 수조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냉동고에 보관하고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9) 죽은 개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도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10) 포획도구(뜰채 등)는 라벨을 부착하여 지정검역물 전용으로만 사용·관리되어야 하며, 수 조별로 구비가 어려운 경우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 11) 실내는 지정검역물의 확인 및 임상검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12)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자 통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 13)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물검역시행장 표지판을 검역시행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 14) 수산생물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비치하고, 품명 및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15) 검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는 별도의 구획된 임상검사 실을 구비해야 하고, 실험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2. 온도조절장치시설

- 1) 야생동물, 외부가축 및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거나 벽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 2) 검역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치류 및 조류(鳥類) 등의 침입이나 배설물, 빗물 등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 3) 검역시설의 바닥은 평평하며,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청소 및 소독이 쉽게 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4) 검역시설은 고인 물이나 퇴적물 없이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관리되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등으로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5) 검역물의 신선도 및 활력도 유지를 위한 온도기록장치가 설비되어 있거나 온도기록대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6) 검역물이 비검역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차단벽, 팔레트 등)·보관해야 한다.

- 7) 검역기간 중 죽은 개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를 구비해야 한다.
- 8) 실내는 지정검역물의 확인 및 임상검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9)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출입자 통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 10)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생물검역시행장 표지판을 검역시행장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 11) 수산생물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비치하고, 품명 및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12) 검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는 별도의 구획된 임상검사실을 구비해야 하고, 실험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 검역시행장 관리기준(별표2)

- 1. 지정검역불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때에는 품종, 검역물 상태, 검역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한다.
- 2. 검역시행장 관리자는 주기적인 청소·소독을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결과를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하며, 청결유지와 소독 등에 대해 검역관 또는 검역관리 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3. 검역관리인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거나 당해 연도 지정검역물이 입고되기 전에 운영 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검역 및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연 1회)하고 그 결과를 <u>별지 제5호서식에</u> 따라 기록관리 해야 한다.
- 4. 검역관이 실시하는 지정검역물 시료채취 및 임상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생물검역표를 작성하고 검역이 종료될 때까지 선하증권(B/L) 단위로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 7.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8.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보세운송 등을 통해 검역시행장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9. 운영자 및 검역관리인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검역시행장에 1년간 갖춰 두어야 한다.

붙임3

## 검역시행장 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

